

【 12 】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6. 10.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정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21세기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가칭)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21세기 살기좋은 새양주」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나. 위촉 대상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다. 분과 위원회 : 4~5개분과

라. 위원회 운영 : 정기회(3개월 1회이상), 임시회(필요시)

마. 위원회의 기능 :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함.

바. 의회 보고 :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시로 군 의회에 보고

사. 위원회의 간사 : 기획감사실장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21세기에 대비한 양주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양주군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군의회의 의견을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최종안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양주군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